

메르스 검진 안내

- ①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·경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자
- ②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환자를 밀접접촉한 적이 있는 자
- ③ 중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자
- ④ 발열(37.5℃), 호흡기 증상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 자 등

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호인력 및 교육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3항제2호에 의거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.